

『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,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 변경
 - 「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
→ 「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」
-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용 조문 정비 (안 제2조)
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
→ 제2조제1호 및 제2호
- 유사·중복된 환경 관련 위원회를 통합(안 제10조)
 - 녹색성장위원회 → 환경정책위원회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,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,
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상위법인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